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3

제출일자 : 2021. 10.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여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정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 추가
(안 제9조5호)

나. 안 별표 1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읍·면 명칭변경(현풍면을 현풍읍으로 수정)
- 체육시설(진천천 파크골프장, 달성보파크골프장 외 2개소)의 명칭 및 위치 추가

다. 안 별표 2
(1) 군민체육관 강습료 연령구분 삭제 및 주1회, 2회, 3회로 세분화
(2)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강습료를 개인, 단체로 세분화
(3) 실외·실내테니스장 단체 사용료 토·공휴일 표기 오기에 따른 정정
(4) 테니스 강습료 주2회, 3회로 세분화
(5) 비고
· 1, 2호 체육경기 추가, 1호에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 추가
· 8호 할인대상자 증명 관련 추가

라. 안 별표 3
(1) 달성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신설
(2) 요가, 에어로빅 사용료는 군민체육관 강습료로 이관되어 삭제
(3)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간을 표로 수정 및 마감이용시간 안내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1. 9. 9. ~ 9. 29.)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입장의 제한)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생 략)		
군민체육관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생 략)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생 략)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신 설)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현행과 같음)		
군민체육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현행과 같음)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진천천 파크골프장	화원읍 구라리 188-1	-파크골프장
달성보 파크골프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창 파크골프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가한정 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현행과 같음)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평 일	체육경기 토·공휴일	체육경기외 평 일	체육경기외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사용	체육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강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어린이		월 80,000 (주 2회)		-	
			일반		월 60,000 (주 3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생 략)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평 일	체육경기 토·공휴일	체육경기외 평 일	체육경기외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사용	체육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강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평 일	체육경기 토·공휴일	체육경기외 평 일	체육경기외 토·공휴일
달성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조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생 략)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 간		면당		-	-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평 일	체육경기 토·공휴일	체육경기외 평 일	체육경기외 토·공휴일
달성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조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단체강습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월 70,000 (주 2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20,000 (주 3회)		-	
					월 100,000 (주 2회)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현행과 같음)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체육공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 간 (1개월, 1일		면당 150,000	-	-	-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1개월, 1일 3시간)	150,000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3시간)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 휴일	평 일	토·공 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80,000			
		1회	20,000			
	실외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30,000			
		1회	15,000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 휴일	평 일	토·공 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주 3회	180,000		-	-
		주 2회	120,000		-	-
	실외테니스장	주 3회	130,000		-	-
		주 2회	75,000		-	-
	1일 강습료 (1회 20분)	실내테니스장	20,000		-	-
		실외테니스장	15,000		-	-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현 행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 18세)			초등 (만6세~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월 50,000원														
	요가 에어로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 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입장요금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100,000		3,200			3,000		2,000		1,000				
비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헬스장	06:00 ~ 22:00	06:00 ~ 22:00	휴 관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 매월 1째주, 3째주 일요일은 전관휴관(월2회)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